

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7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나73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20. 2. 26 선고 2019가소9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백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명수

변론 종결 2020. 10. 15.

판결 선고 2020. 11. 12.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20. 2. 26. 선고 2019가소9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차용인으로서의 변제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4. 2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툼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28. 피고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1,0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동생 D가 빌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로서의 변제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동생 D가 2016. 12.경부터 피고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D가 2017. 4. 28. 원고로부터 노래방의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피고는 D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한 사람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여수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16. 12. 23. 여수시 E 소재 'F'라는 상호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6. 12.경 D가 이 사건 노래방을 개업하겠다는 보증금 등 개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D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 1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의 건물주에게 직접 보증금으로 입금(6,0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2,000만 원은 D 명의로 각 입금)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도 애초 피고가 아닌 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이고, 그 명목이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자금이었던 점, ③ 원고가 2017. 4. 28. 1,000만 원을 입금한 피고 명의의 계좌는 D가 이 사건 노래방의 사업계좌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의 이 사건 노래방 운영에 관한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면 원고의 2017. 4. 28.자 피고 명의 계좌로의 송금은 착오 송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7. 4. 28. 원고로부터 받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D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 사건 노래방의 사업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혜진

판사김종근

판사김평호